

나. 모든 창고·공장 등의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안 제61조)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 내부와 외벽의 마감재료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대상을 모든 공장, 창고시설로 확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
 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건 |
|-------|-------|-----|
| | | |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 전화(☎) 044-201-4992,4988 / 팩스 044-201-5575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3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 가. 성명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 비손푸른엔지니어링(주) (이세홍)
- 나. 전화번호 : 02-445-5805

2. 명칭 :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여과 및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
 감기술

3. 내용요약

<분야>

기계설비 / 환경기계설비 / 기타 환경기계설비

<기술의 요지>

신청기술은 여과재의 조기 폐색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 후 여과재를 역세척하는 기존의 단계별 공
 정을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여과와 역세를 동시에 실시하는 단일공정으로

개량한 기술로서, 여과 중 여과재의 역세척을 통해 여과재의 조기 폐색을 방지하여 요구되는 여과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처리장치(요소기술 I)와 물의 작은 유동에도 쉽게 부유하는 특성의 저비중·고강도 다공질 여과재(요소기술 II) 그리고 전처리조에 조립 형성하여 오염원의 유입부하량을 감소시키는 3단전단 유닛(요소기술 III)으로 구성된 여과재 연속세척형 여과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여과 및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감기술임.

<범위>

여과와 동시에 여과재 역세척을 실시하여 여과재 폐색을 방지하는 여과재 연속세척 여과처리장치, 물의 유동에 쉽게 부유하는 특성의 저비중 고강도 다공질 여과재 그리고 전처리조에 설치하여 비점오염원의 유입부하량을 저감시키는 3단전단 유닛으로 구성된 여과 및 역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비점오염저감기술임.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17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용 내압용기 재검사와 장착검사 기술인력의 자격과 직무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검사품질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내압용기 자동차의 운행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인력 자격 및 직무 기준 명확화(안 별표20)

3. 의견제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5.(월)까지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